

2020년도 5급 신입사원 채용 공고문

“활기차고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우리 공사와 함께 할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1. 채용조건

구분	세부내용
채용신분	◇ 5급 신입사원(신입사원 교육 및 수습근무 후 정규임용) ※ 수습기간 중 내부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 정규임용을 유예 또는 배제할 수 있음
수습기간	◇ 12개월 이내(사정에 따라 기간단축 가능) ※ 수습기간 중 보수는 5급 사원 기준급의 80% 수준
근무지	◇ 전국전형 : 연고지 및 부서별 인력수급현황을 고려하여 배치 ◇ 지역전형 : 해당지역 5년간 의무근무

2. 채용분야 및 인원

(단위 : 명)

채용분야	총계	전국전형					지역전형	
		소계	전국일반	농어촌전형	보훈전형	장애인전형		
계(명)	180	108	72	18	9	9	72	
비율(%)	100%	60%	40%	10%	5%	5%	40%	
행정	소계	44	28	17	4	4	3	16
	경상	26	16	8	3	2	3	10
	법정	13	7	4	1	2	-	6
	농학	5	5	5	0	0	0	-
토목	소계	87	49	27	11	5	6	38
	토목일반	82	44	22	11	5	6	38
	조경	2	2	2	-	-	-	-
	도시계획	3	3	3	-	-	-	-
지질	지질	3	3	3	-	-	-	-
기전	소계	39	21	18	3	-	-	18
	기계	6	3	3	-	-	-	3
	전기	8	2	2	-	-	-	6
	건축	25	16	13	3	-	-	9
전산	전산	2	2	2	-	-	-	-
환경	환경	5	5	5	-	-	-	-

※ 보훈전형은 국가보훈처의 추천자를 대상으로 전형 진행

□ 지역전형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지역 일반					
		경상	법정	토목 일반	기계	전기	건축
소 계	72	10	6	38	3	6	9
경기 권역	8	1	1	4	-	1	1
강원 권역	4	1	-	2	-	-	1
충북 권역	5	1	-	3	-	-	1
충남 권역	11	1	1	6	1	1	1
전북 권역	11	1	1	6	1	1	1
전남 권역	12	2	1	6	1	1	1
경북 권역	10	1	1	5	-	1	2
경남 권역	10	2	1	5	-	1	1
제주 권역	1	-	-	1	-	-	-

※ 서울특별시는 경기권역에 포함, 광역시는 광역시 소재지가 위치하는 해당권역에 포함

3. 응시자격

□ 공통 자격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전공·성별·연령 제한 없으며,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분야(전산, 토목, 지질, 기전, 환경) 응시자는 관련분야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에 한함 <인정자격증: 붙임2 참조> ※ 서류심사 면제대상(고급자격증 보유자) 및 장애인,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도 기술 분야에 응시할 경우 “기사”이상 자격 필요 																																								
공인 어학 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11.1.부터 응시하고, 서류접수마감일(9.16)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 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성적 이상인 자 <어학성적 환산기준: 붙임3 참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6">영어</th> <th>일본어</th> <th colspan="2">중국어</th> </tr> <tr> <th>시험종류</th> <th>TOEFL</th> <th>TOEIC</th> <th>TOEIC-S</th> <th>TEPS</th> <th>New TEPS</th> <th>OPic</th> <th>JPT</th> <th>新HSK</th> <th>BCT</th> </tr> </thead> <tbody> <tr> <td>기준성적</td> <td>IBT 68</td> <td>600점</td> <td>110점</td> <td>482점</td> <td>258점</td> <td>IM1</td> <td>600점</td> <td>4급 210점</td> <td>BCT(B) 600점</td> </tr> <tr> <td>만점기준</td> <td>IBT 98</td> <td>850점</td> <td>150점</td> <td>695점</td> <td>382점</td> <td>IM3</td> <td>850점</td> <td>5급 255점</td> <td>BCT(B) 850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면제대상(고급자격증 보유자)의 경우도 기준 성적이상 공인어학성적 보유해야 지원가능 ※ 장애인·보훈대상자의 경우 장애인·보훈전형에 지원 시 공인어학성적 면제 장애인·보훈전형이 아닌 타(他) 전형 지원 시, 공인어학성적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코로나19 상황 하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에 따른 유효기간 경과 어학성적 인정> - '20.4.22~5.4 기간 중 우리 공사에 어학성적 사전 제출하여 검증이 완료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 	구분	영어						일본어	중국어		시험종류	TOEFL	TOEIC	TOEIC-S	TEPS	New TEPS	OPic	JPT	新HSK	BCT	기준성적	IBT 68	600점	110점	482점	258점	IM1	600점	4급 210점	BCT(B) 600점	만점기준	IBT 98	850점	150점	695점	382점	IM3	850점	5급 255점	BCT(B) 850점
구분	영어						일본어	중국어																																	
시험종류	TOEFL	TOEIC	TOEIC-S	TEPS	New TEPS	OPic	JPT	新HSK	BCT																																
기준성적	IBT 68	600점	110점	482점	258점	IM1	600점	4급 210점	BCT(B) 600점																																
만점기준	IBT 98	850점	150점	695점	382점	IM3	850점	5급 255점	BCT(B) 850점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기타	◇ 당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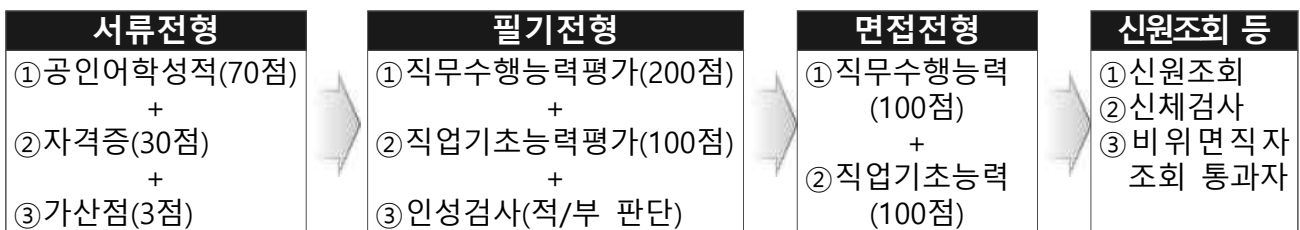
※서류심사면제대상(고급자격증 보유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전형별 자격사항

구분	주요내용
농어촌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 거주자 - (농어업인 자녀) 부모님 중 한 분이 농·임·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지역 거주자)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공고일(9.1)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 중인 자
장애인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위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장애인 전형”이 아닌 타 전형 지원 시 장애인우대 가점부여 ※ “장애인 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타 전형에 중복응시 불가
지역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권역 지역 내 소재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 ※ 최종학력 기준이 아닌 해당권역 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면 가능 단, 대학원 이상 제외
보훈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보훈전형’ (9명)은 국가보훈처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공사에 추천한 대상자에 한해 지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및 심사문의 :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062-975-6652) ※ 보훈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타 전형에 중복응시 불가 ◇ 국가보훈처 추천 보훈대상자 이외에 관련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전형” 외 다른 전형으로 응시 가능하며 관련법에 따른 가점 부여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4. 채용절차



※ (허들식 채용) 채용의 각 단계별 점수는 누적되지 않음

※ (점수계산) 항목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셋째자리 이하 버림)

※ (장애인·보훈전형) 장애인·보훈전형 응시자는 서류전형 시 공인어학성적 면제이므로 공인어학성적(70점) 만점처리

① 서류전형

○ 기본항목 + 가산점

구분	기본항목		가산점		
	공인어학 성적	자격증	전기 분야 지정자격증	지정 외국어	고용 디딤돌
행정	70점	10점	-	1점	1점
기술	70점	30점	1점	1점	1점

※ 자격증 만점: 행정직 10점, 기술직(토목, 지질, 기전, 전산, 환경) 30점

※ 전기 분야 지정자격증은 "기전" 분야 응시자에 한해 가산점 인정

※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서류전형 면제(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공인어학성적 (기본항목)	◇ 취득점수는 TOEIC 환산점수로 하되, TOEIC 외 다른 어학 시험점수는 <붙임 3> 기준에 따른 환산점수를 반영함 - 산출식은 50+(20×취득점수/850)으로 함 * TOEIC 환산점수 850점 이상은 850점으로 계산
자격증 (기본항목)	◇ 대상자 : 서류접수 마감일까지(9.16(수)) 유효한 해당자격 보유한 자 ◇ 공통 인정 자격증(10점) + 채용분야별 인정 자격증(20점) - <붙임 2> 참조하되, 국내 자격증에 한함
전기 분야 지정자격증 (가산점)	◇ 대상자 : 아래 자격 보유자(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자격증)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철도신호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전기기사
지정 외국어 (가산점)	◇ 아래 지정외국어 시험성적 보유자. 단, 2018.11.1.부터 응시하고 서류접수마감일(9.16)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함 - (프랑스어) DELF B1이상 또는 FLEX(듣기/읽기) 701점 이상 - (스페인어) DELE B1이상 또는 FLEX(듣기/읽기) 701점 이상
고용 디딤돌 수료생 (가산점)	◇ 대상자 : 우리공사 고용디딤돌 수료생

○ 지원서 작성불량 지원자는 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내용과 무관한 특수기호 반복 사용, 비속어 사용
- 자기소개서 중 1개 항목 이상 미기재 또는 동일내용 반복
- 서류심사 면제대상도 동일하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해야함

○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 채용분야별(보훈전형 제외) 채용예정인원의 각 25배수 인원을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동점자 전원 선발)

② 필기전형

- 시험과목: 직무수행능력(200점), 직업기초능력(100점), 인성검사(적/부 판단)
- 객관식(5지 선다)으로 출제되며, 시험문제 출제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

시험과목	채용분야		출제범위(수준)
직무수행 능력 (40문항, 200점)	경상 (택1)	경영학	경영학원론, 재무관리, 마케팅,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재무회계, 관리회계
		경제학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법정 (택1)	법학	헌법, 민법(가족법 제외), 민사소송법, 행정법
		행정학	행정학원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조직론
	농학 (택1)	농학	농학
		농업경제학	농업경제학
	전산	전산학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론
	토목일반	토목학	수리학, 농업수리학, 응용역학
	조경	조경학	조경계획론, 조경설계론, 조경관리론
	도시계획	도시계획학	도시계획론,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국토 및 지역계획
	지질	지질학	지하수학, 암석학, 지질공학, 물리탐사학
	기계	기계학	유체기계, 재료역학, 열역학
	전기	전기학	전력공학,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기기
	건축	건축학	건축구조, 건축계획, 건축시공
환경 (택1)	생물학	생물학, 계통분류학, 환경생태학, 수질환경, 토양 환경, 환경영향평가 관계법규	
	토양학	토양학(농업분야), 환경생태학, 수질환경, 토양 환경, 환경영향평가 관계법규	
직업기초 능력 (50문항, 100점)	경상, 법정, 농학, 전산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정보 능력, 자원관리능력(혼합출제)
	토목일반, 조경, 도시계획,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환경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정보 능력, 기술능력(혼합출제)
인성검사	전 분야		태도,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등 인성 전반

※ 난이도 : 해당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 또는 기사자격시험 수준 이상

※ 선택과목(경상, 법정, 농학, 환경 해당) 점수는 표준점수제에 의해 동일한 척도로 조정

○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각 2배수 인원을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동점자 전원 선발)
- 인성검사결과 부적격에 해당되는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탈락
- 각 과목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합격자에서 제외
 - ※ 선택과목(경상, 법정, 농학, 환경 해당) 점수는 원점수와 표준점수제에 따른 변환 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40% 이상일 경우 과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
- 단, 전형별 세부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 별도 적용

채용예정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필기전형 합격자 수	3명	6명	9명	10명	12명

③ 면접전형

- 심사방법 : 직무수행능력 면접과 직업기초능력 면접 등 평가진행
 - 블라인드 면접으로 시행하며, 면접방식 및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내용

구 분	평 가 내 용
직무수행능력 면접	실무지식, 직무역량 등
직업기초능력 면접	직업윤리,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각 단계별 40%이상 득점하고 합산점수 60%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
 - ※ (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필기전형 중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과목) 고득점자
 - (3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5. 채용 시 우대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취업지원 대 상 자	◇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법에 따른 가점을 부여(단계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고급자격증 보 유 자	◇ 대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서류심사 면제 [공인어학성적 등 기본 지원 자격 구비 완료 시]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가산
저소득층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북 한 이탈주민	◇ 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다문화 가 족	◇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필기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 ※ 모든 우대혜택은 기본지원 자격 구비 완료 시 적용
- ※ 우대사항 중복 시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항만 적용
- ※ 서류전형, 필기전형 각 과목별 또는 면접전형 각 단계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
- ※ 채용분야별, 전형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우대사항 적용
- ※ 상기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및 채용예정일 기준 모두 유효해야함

6. 양성평등 및 이천지역인재 채용목표제

구 분	주 요 내 용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채용분야별·전형별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해당 전형단계 선발 인원의 20%에 미달 시, 채용인원 외 추가합격
이천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이천지역인재(대학까지의 최종학력 학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지역인 자)가 24%에 미달 시 채용인원 외 추가 합격

- ※ 필기·면접전형 단계에서 적용(서류심사단계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 ※ 이천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전국전형」 및 「전남권역 지역 전형」 중 채용분야별·전형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분야에 해당,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채용분야별·전형별 4명 이상인 모집분야에 해당되며,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단, 채용전형별 합격선 -7점 이내인 자에 한하며, 필기전형 각 과목별 또는 면접전형 각 단계별 득점이 40% 미만이거나, 면접전형 득점이 6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 ※ 이천지역인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등학교 이상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학교를 졸업(예정)한 자를 의미 <붙임 7> 참고 단, 대학원·사이버대학·독학학위취득자 등은 해당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함

7. 채용일정

구분	일자	주요내용
공고일	9.01(화)	• 채용공고(세부내용 및 기준)
지원서 접수	9.09(수) 10:00 ~9.16(수) 16:00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서류전형	9.17(목) ~9.29(화)	• 응시자가 입력한 정보로 평가(공인어학 성적, 자격증 등 서류전형 가점사항)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10.07(수)	• 채용 홈페이지 •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
추가정보 입력	10.07(수) ~10.12(월)	• 학력소재지 및 성별(이전지역인재, 양성 평등 채용목표제, 지역전형 응시분야 확인 등)
필기전형	10.24(토)	• 필기시험 장소 추후 안내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11.03(화)	• 채용 홈페이지 •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11.03(화) ~11.05(목)	• 응시자격 및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온라인 제출 ※ 해당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하고(면접응시 불가), 차순위자에게 면접응시 기회 부여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11.25(수)	• 채용 홈페이지
면접시험	12.01(화) ~12.08(화)	• 우리공사 본사(전남 나주) 예정 ※ 온라인으로 제출한 증빙서류 원본 제출
최종합격자 발표	12.17(목)	• 채용 홈페이지
수습 임용	‘20.12.31(목)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등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 홈페이지 통해 공지예정

8.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는 “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정보취득 시점	목적 및 사유
본인확인	지원서 접수시	○ 응시자 본인 확인
어학성적		○ 우리공사 해외사업에 행정, 기술 인력이 고루 근무하고 있어(순환근무 등) 일정수준의 어학 성적 요구됨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전형 해당여부 확인, 채용 각 단계별 가점 부여 (관련법에 따라 등급별 5~10% 차등 적용)
장애인 여부		○ 전형 해당여부 확인, 필기시험 가점 부여
저소득층 여부		○ 필기시험 가점 부여
다문화가족 여부		○ 필기시험 가점 부여
북한이탈주민 여부		○ 필기시험 가점 부여
학력 소재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후	○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최종학력) ○ “지역전형” 채용분야 해당여부 확인(학력)
성별	정해진 기간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학점, 주소 기재란 없음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나이,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외국어, 지역인재 관련 정보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화면에서 등록한 정보 등은 면접전형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을 위반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노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

9.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공인어학성적, 자격증, 농어촌전형 및 장애인·보훈전형 등 모든 응시 자격 및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은 서류접수마감일(9.16)까지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일(9.1)포함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단, '20.4.22~5.4 기간 중 우리 공사에 어학성적 사전 제출하여 검증이 완료된 성적에 한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어학성적 제출 가능

구분	제출서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 채용 관련 공사 인정 자격증 사본(기술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한국산업인력공단)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 관련 공사 인정 자격증 사본(전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한국산업인력공단) ○ 농어업인자녀 증빙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중 한 분 이상 농·임·축산·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쌀전업농육성대상자확인서(우리공사 각 지사) -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 조합원 증명서(각 조합) - 농지원부(시·군·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작사실확인서¹⁾(우리공사 소정양식) 첨부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 및 독립가 증명서(시·군) - 신지식임업인 인증서(산림청) - 영림단원확인서(국유림 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 증명서(행정기관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신고어업의 경우 신고필증 및 당사자가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어업인확인서²⁾(우리공사 소정양식) 첨부 ※ 경작사실확인서¹⁾ 및 어업인확인서²⁾는 우리공사 소정양식(홈페이지에 게시)을 다운받아 사용 ○ 농어촌지역 거주자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거주지 이전내역 포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장애인증명서(시·군·구청),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시·군·구청)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시·군·구청),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 가족 관계증명서 및 부(父) 또는 모(母)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다문화가족자녀 :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1부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단,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대신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 “이전지역인재” 및 “지역전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지역인재는 대학까지 최종학력 학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지역인 자 - 지역전형은 해당권역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

□ 제출시기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정해진 기간 내(11.3~11.5)

- 기간 내 온라인으로 사본을 제출하고, 면접시험 시 증빙서류 원본 제출
 -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면접시험 대상자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 확인 결과 응시자가 지원서에 입력한 정보와 “불일치” 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 응시자 개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입력 누락, 오 입력 등에 따른 “불일치” 또는 제출하지 않은 모든 경우 불합격 처리

10. 예비합격자 및 부정행위자 조치 운영방안

- 필기 및 면접 단계에서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에게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적격자 : 과락, 인성검사 부적격, 시험 불참,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사 「채용관리세칙」 제19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 비위행위자 및 부정합격자 등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채용홈페이지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12. 유의사항

- 채용홈페이지 원서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 내 요구된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의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등 공사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특히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임이 판명되면 합격이 무효가 됨은 물론, 서류 위·변조 시에는 추후 우리 공사 사원 선발 시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수험표는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출력 가능)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화에 필요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공사는 채용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채용시 자격 제한,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채용관리세칙 제19조의2)에 따라 조치합니다.
- 면접 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면접탈락자에 한해 가능하며, <붙임6>의 양식을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를 방문하여 원본 제출하거나, 스캔하여 송부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필기 및 면접전형 시 유의사항
 - 전형 당일 기준 확진판정 후 미 완치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응시 불가
 - 지원자가 전형 당일 문진표 작성, 발열 검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조치에 비협조 시 응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전형 당일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정도에 따라 별도 고사장에서 응시하거나 귀가조치(선별 진료소 방문 연계) 될 수 있음
 - * 37.5°C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 전염병 확산 및 정부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한 채용일정 변경 가능
- 지정기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입사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선발 할 수 있습니다.(추가합격자는 임용 동의서 제출 필수)
- 채용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 내부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 정규 임용을 유예 또는 배제할 수 있음
- 우리 회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정책에 의거, 분기별로 회사 홈페이지에 입사자와 재직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에 따라 지원서 작성 및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미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채용관련 문의는 콜센터 또는 채용 홈페이지 Q&A 게시판으로 문의 바랍니다.
 - 콜센터 : 070-5223-1887, 070-5223-1888
 - 채용 홈페이지 : <https://krc.recruiter.co.kr/>

【붙임 1】

인사규정 제9조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7.1.)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붙임 2】

채용 관련 자격증

□ 자격증 적용기준(30점)

○ 공통 인정 자격증 10점 + 직계별 인정 자격증 20점

※ 행정직 10점 만점 (공통 인정 자격증 10점)

기술직(토목,지질,기전,전산,환경) 30점 만점

(공통인정자격증 10점 + 직계별 인정 자격증 20점)

□ 공통 인정 자격증(10점)

○ 분야별 자격증 점수를 합산하되 최대 10점까지 인정하며, 동일분야 내에서는 최고등급 자격증 1개만 적용

예) 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5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4점) ⇒ 5점

② 국어능력인증시험 1급(5점), KBS한국어능력 1급(5점) ⇒ 5점

③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5점), 정보처리기사(5점) ⇒ 10점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5점), 한국실용글쓰기 1급(5점),

정보처리산업기사(4점) ⇒ 10점

분야	1등급 (5점)	2등급 (4점)	3등급 (3점)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국어능력	국어능력인증시험 1급	국어능력인증 2급	국어능력인증 3급
	KBS한국어능력 1급	KBS한국어능력 2+급	KBS한국어능력 2-급
	한국실용글쓰기 1급	한국실용글쓰기 2급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
IT능력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만 인정

※ "전산일반" 분야 응시자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별 인정 자격증으로만 인정하고, 공통 인정자격증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국어능력인증, KBS한국어능력, 한국실용글쓰기" 자격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해 인정

□ 직계별 인정 자격증(20점)

○ 응시분야 자격증 중 최고등급 자격증 1개 해당 점수 적용

예) ①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 ⇒ 20점

② 건설기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 10점

직 계	응시분야	1등급 (20점)	2등급 (10점)
행정	경상/법정/농학		
전산	전산일반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포함)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토목	토목일반	토질및기초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항만및해안기술사, 도로및공항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토목기사, 건설안전기사, 해양공학기사
	조경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도시계획	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기사
기전	기계	건설기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기계가공기능장,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기계기술사(舊기계공정설계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배관기능장, 용접기능장,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용접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舊 건설기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농업기계기사, 용접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설비보전기사, 기계설계기사, 건축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전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안전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소방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건축	건축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지질	지질	지질및지반기술사, 자원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광해방지기술사	응용지질기사, 토양환경기사, 광해방지기사, 광산보안기사
환경	환경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농화학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축산기술사, 해양기술사, 수산양식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생물분류기사(식물, 동물), 자연생태복원기사, 토양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소음진동기사, 농화학기사, 식물보호기사, 유기농업기사, 축산기사, 화학분석기사, 수산양식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산림기사

【붙임 3】

공인 어학성적 TOEIC 환산기준표

□ 영어

TEPS vs TOEIC							
TEPS	TOEIC	TEPS	TOEIC	TEPS	TOEIC	TEPS	TOEIC
695~700	850	623~627	785	569~572	720	524~526	655
688~694	845	619~622	780	566~568	715	520~523	650
681~687	840	615~618	775	562~565	710	516~519	645
675~680	835	611~614	770	558~561	705	512~515	640
669~674	830	606~610	765	555~557	700	508~511	635
663~668	825	602~605	760	551~554	695	505~507	630
658~662	820	598~601	755	548~550	690	501~504	625
652~657	815	594~597	750	544~547	685	497~500	620
647~651	810	590~593	745	541~543	680	493~496	615
642~646	805	585~589	740	538~540	675	489~492	610
637~641	800	581~584	735	534~537	670	486~488	605
632~636	795	577~580	730	531~533	665	482~485	600
628~631	790	573~576	725	527~530	660		

개정 TEPS(New TEPS) vs TOEIC							
New TEPS	TOEIC	New TEPS	TOEIC	New TEPS	TOEIC	New TEPS	TOEIC
382~386	850	339~340	785	308~309	720	282~283	655
379~381	845	336~338	780	306~307	715	280~281	650
374~378	840	334~335	775	304~305	710	279	645
371~373	835	332~333	770	302~303	705	276~278	640
366~370	830	330~331	765	300~301	700	273~275	635
362~365	825	328~329	760	298~299	695	271~272	630
360~361	820	326~327	755	295~297	690	268~270	625
356~359	815	322~325	750	293~294	685	266~267	620
353~355	810	320~321	745	292	680	264~265	615
351~352	805	317~319	740	290~291	675	262~263	610
348~350	800	315~316	735	287~289	670	260~261	605
344~347	795	313~314	730	286~286	665	258~259	600
341~343	790	310~312	725	284~285	660		

TOEFL vs TOEIC							
TOEFL	TOEIC	TOEFL	TOEIC	TOEFL	TOEIC	TOEFL	TOEIC
98	850	90	790	82	725	74	645
97	840	89	785	81	715	73	640
96	835	88	780	80	705	72	630
95	825	87	765	79	695	71	620
94	820	86	760	78	685	70	615
93	815	85	750	77	675	69	605
92	810	84	745	76	665	68	600
91	800	83	735	75	655		

TOEIC-S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20	110
TOEIC	990	980	960	935	905	870	830	775	705	625

OPIc	AL	IH	IM3	IM2	IM1
TOEIC	980	935	860	765	600

□ 일본어 : JPT 성적 고유점수

□ 중국어

○ 新HSK

- 환산점수 = ③해당등급 1,000점 환산점수 범위의 최저점 +
{(응시자성적총점- ①해당등급 등급점수범위의 최저점)×②점수폭}

등 급	① 등급점수범위	② 점수폭	③ 1,000점 환산점수 범위
新 HSK 1급	120~200	0.98	121~199
新 HSK 2급	120~200	1.23	201~299
新 HSK 3급	180~209	1.66	301~349
	210~239	1.66	351~399
	240~300	1.63	401~499
新 HSK 4급	180~194	3.43	501~549
	195~209	3.43	551~599
	210~300	1.09	601~699
新 HSK 5급	180~194	3.43	701~749
	195~209	3.43	751~799
	210~300	1.09	801~899
新 HSK 6급	180~194	1.71	901~925
	195~209	1.71	926~950
	210~300	0.54	951~

○ BCT : BCT(듣기/읽기) 성적 고유점수

【붙임 4】

경작사실 확인서(양식)

본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지원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첨부**하십시오!

경 작 사 실 확 인 서

본 확인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경작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확인서를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사 지원자, 경작인의 인적사항 및 경작사항		
입 사 지원자	성 명	(지원분야 :)
	생년월일	
경 작 자 (입사지원자 부모님)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 실제거주지
	연 락 처	휴대전화 : 집 :
경작사항	대상농지	* 세부내역은 농지원부 참고
	경작기간	~
상기 인은 관내에서 1년 중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 인 자		
직 명	이 . 통 장	
성 명	(서명날인)	
생년월일		
연 락 처		

한국농어촌공사 귀중

【붙임 5】

어업 확인서(양식)

본 어업인 확인서는 신고어업 증명서(신고필증)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첨부하십시오

어업인 확인서

본 어업인 확인 증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업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어촌계장님께서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사 지원자 및 어업인의 인적사항		
입사 지원자	성명	(지원분야 :)
	생년월일	
어업인 (입사지원자 부모님)	성명	(한자 :)
	생년월일	
	어업종류, 기간	(. . ~)
	주소	주민등록 실제거주지
	연락처	휴대전화 : 집 :
상기 인은 _____ 어촌계 관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임을 확인합니다. 20 . . .		
확 인 자		
직위	어촌계장	
성명	(어촌계직인)	
생년월일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귀중

【붙임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 7】

이전 지역인재 상세내용

※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름

1. 이전 지역인재 개념

- 이전 지역(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 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
 -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에서 재학(휴학) 중인 자는 포함
- ※ 대학졸업예정자의 범위 :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공사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함.**

2. 이전지역(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지방대학의 범위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 학교 등의 본교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③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3. 이전지역인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범위

-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㉔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㉖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㉗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㉘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감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감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감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감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감지역 변경 : 비해당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